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102596	★주무관	주민자치협력팀장	자치행정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5. 12. 4.	이근하	송우석	정주영	고한석	하철승	전결 12/04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
			법무팀장	이기호			
			주무관	송수연			



『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』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의견

2015. 12. 1.



강 북 구
(자 치 행 정 과)

『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』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의견

I 개정조례(안) 개요

- 발 의 일: 2015.11.26.
- 발 의 자: 구본승 의원
- 찬 성 자: 이정식 의원, 김명숙 의원
- 개정이유: 강북구민대상에 강북구의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환경상을 신설하여 환경보전운동의 생활화와 환경보전의식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.
- 검토의견: 일부개정조례(안) 수용

II 주요 내용

- 강북구민대상에 “환경상” 을 신설 (안 제3조)
- “환경상” 의 심사기준 신설 (안 제3조의2제7호 신설)
 - 심사기준 :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한 경우

III 검토 의견

- 일부개정조례안 수용
 - 강북구민대상의 기존 6개 부문에 환경상 부문을 추가함으로써,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하려는 구정 기본 운영 방향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을 뿐아니라, 환경보전운동의 생활화와 환경보전 의식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.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1부.
2. 현행 조례 1부.
3. 서울시 자치구별 구민대상 관련법규 현황 1부. 끝.

